현장점검 대토론회 토론자료
(금융투자업)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2016. 2. 4

<목 차>

1 증권회사의 IB 비즈니스 활성화

2 다양한 투자일임상품 출현 가능

3 다양한 고객니즈를 충족시키는 펀드상품

4 선물사 비즈니스 확대

5 고객편의성 제고 및 비용절감

6 기타 현장점검 개선사항

1 증권회사의 IB 비즈니스 활성화

(1) 외국 국채 매출규제 완화

(2) 인수증권사의 수요예측 참여

(3) PF연계 사모펀드 정보교류차단 규제 적용배제

(4) 증권회사 PF대출에 대한 만기제한 폐지

(5)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한도규제 완화

증권회사의 IB 비즈니스 활성화

금융투자협회

(1)외국국채 매출규제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 증권사가 외국 국채를 직접 매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 정부가 매출신고서를 제출해야함
- 중개방식으로만 판매할 수밖에 없어 외국 현지 증권사에 중개수수료 지급 → 거래비용증가
- 예탁원과 업무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 채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 불명확

2 개선사항

- 신용도가 우수한 외국 국채의 경우, 신고서 제출 면제

('16.1.20 해외국채 중 A등급 이상에 대해 면제방침 발표, 추후 시행령 개정 예정)

3 상품화 및 사업화 방안

- 증권회사의 외국 국채대상 사업모델 개선

(기존 단순중개모델 → 투자매매모델)

※ 현재 고객의 요청에 의해 외국 국채를 단순히 중개하는 업무에 그침

4 기대효과

- 외국 국채 재고보유 및 매출이 가능해져 투자수요발생시 신속한 상품공급 가능
- 예탁자 명의 문제 해소 및 비용절감

추가 필요조치 사항	외국국채도 RP,MMF에 편입가능한 증권으로 열거필요* * 현재 RP, MMF에 편입가능한 증권은 법령에 열거

증권회사의 IB 비즈니스 활성화

금융투자협회

(2)인수증권사 수요예측 참여

1 현황 및 문제점

- 인수증권사는 수요예측 참여 및 배정 금지
- IPO 인수단에 참여하는 IB들은 우량공모주시장에서 배제됨에 따라 자산운용상 과도한 불이익을 감수

2 개선사항

- 인수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허용 및 공모증권 취득 허용

('15.10 증권사 경쟁력강화방안 발표에 포함

→ 추후 협회 인수업무규정 개정 예정)

3 상품화 및 사업화 방안

- 인수단에 참여하는 IB의 PI(고유재산운용부서)가 자사가 인수하는 우량 공모주 또는 무보증 사채에 대해서도 수요예측 참여

(다만, 수요예측 참여시 매입희망 물량의 제시만 허용하며, 공모가 또는 발행금리의 제시는 금지)

4 기대효과

- 인수증권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및 영업수단 다변화로 수익성 개선
- 발행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으로 발행시장 발전에 기여가능

증권회사의 IB 비즈니스 활성화

금융투자협회

1 현황 및 문제점

- 정보교류 차단규제는 인적·물적 교류까지 원천차단하고 있어, 효율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저해
- IB업무 수행시 펀드설정·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증권사의 집합투자업 겸영 차단으로 독자적 업무수행이 불가

2 개선사항

-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무 허용
  - PF 자문, 주선과 연계하여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등에 한하여 정보교류 차단 예외 인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입법예고 '16.1)

(3)PF연계 사모펀드 정보교류 차단 규제 적용배제

3 상품화 및 사업화 방안

- IB부서에서 대체투자자산 발굴에서부터 투자자모집 및 펀드 설정 및 운용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설명

4 기대효과

- 증권사 IB부서가 딜 주선 이후 직접 운용을 담당하여 사후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안정적 딜 위주의 책임있는 투자 가능

증권회사의 IB 비즈니스 활성화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IB부서의 One-stop 서비스를 이용한 투자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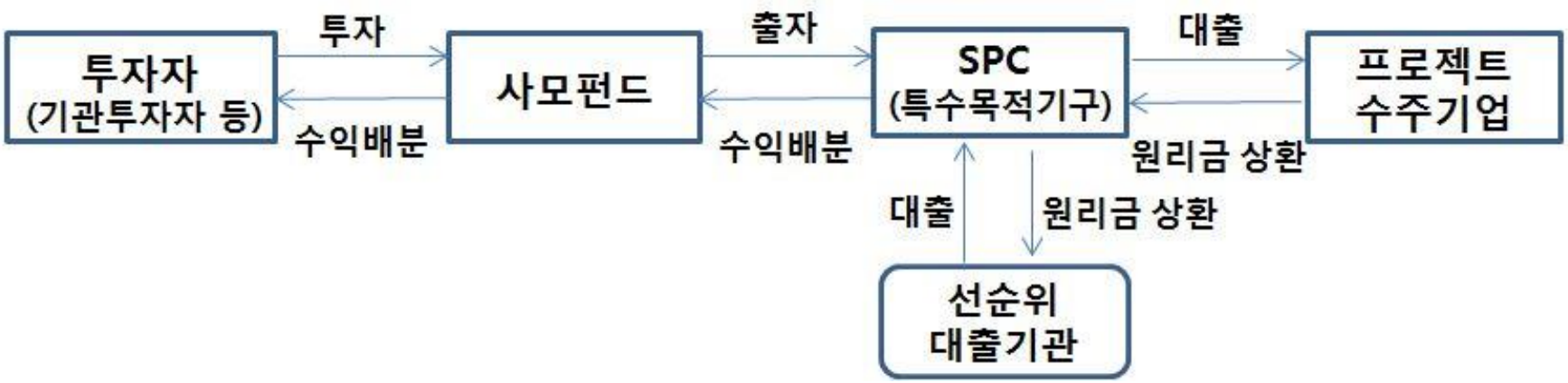

증권회사의 IB 비즈니스 활성화

금융투자협회

(4)증권회사 PF대출에 대한 만기제한 폐지

1 현황 및 문제점

- PF 대출 필요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현실과 만기제한 규제간 괴리로 증권회사의 PF 대출 영업을 제약

(금융투자업규정 §4-1조 ②)

2 개선사항

- PF대출에 대한 만기제한 폐지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16.1)

3 상품화 및 사업화 방안

- 부동산, SOC 등 대규모 중장기 투자금이 필요한 PF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초기자금(브릿지론) 필요 기간에 맞게 증권회사가 자금 공급

4 기대효과

- 브릿지론 공급능력 확대를 통한 실물부문 자금 공급기능 강화

증권회사의 IB 비즈니스 활성화

금융투자협회

(5)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한도규제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한해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
- '기업 신용공여+일반 신용공여'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77의3 ④)

2 개선사항

- 일반 신용공여와 별도로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
- 기업 및 일반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지급보증 제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고 '16.1)

3 상품화 및 사업화 방안

- 별도 한도 부여시 약 16.5조원의 추가 기업신용공여 가능

('15. 9월말 현재 기업 신용공여 2.5조)

4 기대효과

-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자금공급 기능 강화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 편의성 제고

증권회사의 IB 비즈니스 활성화

금융투자협회

현장점검 외 "금융투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개선된 사항

1 중소기업 IB 특화 증권사 육성

- 중소 및 벤처기업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기특화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특화 증권사 지정참여 유도

→ 대형 IB들은 대형 프로젝트에, 중소형 증권사는 중소 및 벤처기업 기업금융업무에 특화하고 수익성을 강화

2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 정비

- 기존 엄격한 QIB 대상 사모시장의 규제를 대폭완화하여 사모발행시장 활성화 유도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한 QIB 시장 증권발행 허용,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확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 향후 QIB 시장 발행증권을 비상장주식 등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

2 다양한 투자일임상품 출현 가능

(6) 투자일임재산에 해외상장ETF 편입

(7) 겸영 투자일임업자의 금전·증권 대여 허용

(8) 투자일임업자 IPO 수요예측 허용

(9)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일임재산 편입허용

다양한 투자일임상품 출현 가능

금융투자협회

(6) 투자일임재산에 해외상장ETF 편입

1 현황 및 문제점

-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한 해외상장ETF 투자 가능 여부가 불명확

2 개선사항

-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한 해외상장 ETF의 투자가능여부가 명확화 ('15.4.24 법령해석)

3 상품화 및 사업화 방안

- 다양한 해외상장ETF를 활용한 랩상품 출시 가능

(사례) 해외상장ETF를 활용한 Passive 랩상품 출시 가능

(사례) 벤치마킹 추종 글로벌 자산배분형 랩상품 출시 가능

4 기대효과

- 기존 해외주식 직접운용상품은 Active형으로, 해외상장ETF 투자상품은 Passive형으로 운용
- 투자자성향에 맞는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다양한 투자일임상품 출현 가능

금융투자협회

(7)겸영 투자일임업자의 금전·증권 대여 허용

1 현황 및 문제점

-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증권회사)가 금전, 증권, 재산의 대여 등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불명확 (법 §98의1 ②)

2 개선사항

- 투자매매와 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증권회사)에 대해 금전 및 증권의 대여가능여부가 명확해짐 ('15.4.24 법령해석)

3 상품화 및 사업화 방안

- 시장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익을 추구하는 절대수익추구형 랩상품 출시가능
- 랩에서 직접 채권을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롱숏주식 전략운용

4 기대효과

- ELB 편입 등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 랩에서 직접 롱숏전략이 가능하여 고객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랩상품 출시가능

다양한 투자일임상품 출현 가능

금융투자협회

(8)투자일임업자 IPO 수요예측 허용

1 현황 및 문제점

- IPO시, 투자일임업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에서 배제

2 개선사항

- 투자일임업자가 일임계정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를 허용
  - 단, '계약후 3개월+5억원 이상'인 기관투자자의 일임재산으로 참가가능

('15.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완료)

3 상품화 및 사업화 방안

- 공모주 투자 일임 상품 가능
- 연기금, 보험사 등이 자산운용을 투자일임업자에게 위탁하는 비중 증가

4 기대효과

- IPO 발행시장 활성화 및 일임회사 상품운용 다양화

다양한 투자일임상품 출현 가능

금융투자협회

(9)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일임재산 편입허용

1 현황 및 문제점

-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격 왜곡 가능성이 적음에도 투자기회를 제한

2 개선사항

-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지분증권이 상장된 경우, 시장에서 매수하는 조건으로 일임재산의 편입 허용

('15.10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완료)

3 상품화 및 사업화 방안

-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중 상장증권에 대해 고객 투자일임재산에 편입·운용 가능

4 기대효과

- 투자일임재산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수익성을 제고

3 다양한 고객니즈를 충족시키는 펀드상품

(10) 자산배분펀드(혼합자산펀드) 허용

(11) 성과보수형 공모펀드 도입검토

(12) 최소 증권대차거래기간 보장 허용

(13) 펀드의 환매수수료 관련 자율권 확대

다양한 고객니즈를 충족시키는 펀드상품

금융투자협회

1 현황 및 문제점

- 혼합자산형 자산배분펀드 도입을 행정지도로 제한
- 자산배분형펀드 가이드라인에서 한 펀드내에 주식·채권 투자는 가능하나, 부동산·특별자산 등은 금지

2 개선사항

- 자산배분펀드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여 자유롭게 혼합자산펀드 설정 허용('14.12)

(10) 자산배분펀드 (혼합자산펀드) 허용

3 상품화 및 사업화 방안

- 현재 증권형 자산배분펀드 (설정원본 약 7,845억원, '16.1.26 기준) 외에 혼합자산형 자산배분펀드 출시 가능

4 기대효과

- 해당 펀드는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모든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시황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투자 가능

다양한 고객니즈를 충족시키는 펀드상품

금융투자협회

(11) 성과보수형 공모펀드 도입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 공모펀드의 성과보수가 허용되어 있지만, 제약요건이 많아 성과보수 적용하는 펀드 없음

2 개선사항

- 현재 공모펀드의 성과보수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
- 현장점검 건의 후 정부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펀드의 보수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3 상품화 및 사업화 방안

- 성과보수 지급형 공모펀드 출시

추가 필요조치 사항

-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요건합리화 필요**
  1) 증권시장 등 공인지수 사용 폐지 또는 투자자수익률로 전환
  2) 최소투자금액 폐지 또는 자율로 전환
  3)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추가납입금지 조건 폐지
  4) (-) 수익률시 성과보수를 미지급하고 운용보수를 낮추는 현안은 유지

4 기대효과

- 운용사의 펀드 운용책임을 강화하고 사모펀드 대비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가능

다양한 고객니즈를 충족시키는 펀드상품

금융투자협회

(12)최소 증권대차 거래기간 보장 허용

1 현황 및 문제점

- 증권대차거래시 대여자는 언제라도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어 증권차입을 활용한 자산운용 곤란

2 개선사항

- 증권대차거래시 건별로 대여자와 차입자가 상호협의하여 최소 대차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예탁원 규정개정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반영예정)

3 상품화 및 사업화 방안

- 롱숏전략을 수행하는 절대수익추구형 펀드의 수시상환 리스크가 해소되어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가능

4 기대효과

- 저금리 박스권 증시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운용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절대수익추구형 펀드증가로 국민 재산증식에 기여

다양한 고객니즈를 충족시키는 펀드상품

금융투자협회

(13)펀드의 환매수수료 관련 자율권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펀드 환매수수료율 및 부과기간 설정은 펀드 상품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은 환매수수료 때문에 환매시기를 놓쳐 수익률 달성에 부정적

2 개선사항

- 자산운용사가 자율적으로 환매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폐지('14.12)

3 상품화 및 사업화 방안

- 환매수수료를 다양하게 부과하는 펀드상품 기 출시
- 랩어카운트에서도 환매수수료가 면제되는 펀드를 활용하여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4 기대효과

- 환매수수료율 및 부과기간의 자율성 증대로 펀드상품의 다양성 및 경쟁력이 증가하고, 투자자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선택권이 증대

추가 필요조치 사항

- 종류형(클래스) 펀드간에도 운용사가 환매수수료를 자율화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 확대가 필요

4 선물사 비즈니스 확대

(14) 선물사 신용공여 업무 허용

(15) 주식선물 종목다양화

선물사 비즈니스 확대

금융투자협회

(14)선물사 신용공여 업무 허용

1 현황 및 문제점

- 전업 선물회사가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금전융자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

2 개선사항

- 법시행령 해석을 통해 전업선물회사도 증권담보금전융자가 가능

('15.9.24 금융위 법령해석, 법 §69의1 ②)

3 상품화 및 사업화 방안

- 담보증권: 증거금에 이용되지 않은 대용증권을 담보로 한 현금 대출
- 대출용도: 투자자의 현금 위탁증거금 납부 용도에 한함
- 대출방법 : 투자자는 파생상품 거래계좌와 별도계좌를 선물사에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담보용 증권을 납입

* 현재 선물사, 유관기관과 함께 실무 TF구성 업무추진중

4 기대효과

- 수출입 업체 등이 환헤지, 원자재가격 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거래가 필요한 경우, 증권을 예탁하고 이를 담보로 금전융자를 받은 자금을 파생상품거래시 증거금으로 사용가능

- 기관투자자는 금전융자 자금을 파생상품거래시 일일정산 등으로 활용가능

선물사 비즈니스 확대

금융투자협회

(15)주식선물 종목다양화

1 현황 및 문제점

- 주식선물 기초자산 선정요건이 엄격하여 일부 대형 우량주도 기초자산에서 제외
  → 투자 및 위험회피수단 제한
- 종목별로 단수 LP만 허용하여 시장 유동성 공급에 한계

2 개선사항

- 현재 엄격하게 제한되는 주식선물이 허용되는 상장종목 수를 확대하고, 종목당 복수 증권사의 LP참여허용

('16 상반기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예정)

3 상품화 및 사업화 방안

- 주식선물 종목 확대시, 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식선물 바스켓과 코스피200선물 간의 선선 차익거래가능

4 기대효과

- 차익거래 기회 확대, 투자자 위험관리수단 다양화, 현물시장 유동성 증대
- 호가 스프레드 축소 (거래비용 경감, 시장효율성 증대)

5 고객편의성 제고 및 비용절감

(16) OTP 비대면 발급허용

(17) 외국인투자자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의무 면제

고객편의성 제고 및 비용절감

금융투자협회

(16)OTP 비대면 발급 허용

1 현황 및 문제점

- OTP 등 접근매체 발행시 반드시 대면하여 본인 실명증표를 확인하도록 하여, OTP 비대면 발급이 불가
  (전자금융감독규정 §34조 ②)
- 내방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 가중

2 개선사항

- OTP 발급시 비대면방식 발급 허용
  ('16 상반기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또는 법령해석 변경 예정)

3 상품화 및 사업화 방안

- 우편·택배를 통한 OTP 발급 가능
- 모바일을 통한 OTP발급이 허용되면, 스마트폰이 OTP 매체기능을 수행하여 자금이체 및 유가증권대체거래 가능

4 기대효과

- 증권회사의 OTP발급관련 비용절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증진
- 비밀번호 유출가능성 등 보안이 취약한 보안카드에서 OTP로의 대체 촉진

고객편의성 제고 및 비용절감

금융투자협회

(17) 외국인투자자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의무 면제

1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이 국내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가 매매체결 정보를 해외 증권사에 전달시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 징구

2 개선사항

- 매매체결 정보는 투자자의 정보제공 동의 불요

('15.10 실명법 법령해석)

3 상품화 및 사업화 방안

<비용절감 및 업무개선 방안>

- 동의서 징구, 보관 및 관리로 인한 업무부담 경감
- 동의서 제공절차에 대한 불편함으로 투자를 꺼리던 외국인들의 거래재개 가능

4 기대효과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 투자촉진 가능
- 한국금융시장의 이미지 개선 및 증권사 업무부담 경감 가능

6 기타 현장점검 개선사항

(18) 노란우산공제 판매 허용

(19) 외국계 증권사 물리적 망분리 완화

기타 현장점검 개선사항

금융투자협회

(18) 노란우산공제 판매 허용

1 현황 및 문제점

- 은행권은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이 허용('12년) 되었으나 금융투자업권은 근거규정이 없어 판매불가

(은행업감독규정 §25의2 ②)

2 개선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 대상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업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추가

('16.1 금투업규정 입법예고)

3 기대효과

-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영업기반 확대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기회 제공

('14년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수: 326만개)

('15년 11월 누적 가입자 수: 60만명)

기타 현장점검 개선사항

금융투자협회

(19) 외국계증권사 물리적 망분리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함
- 국내 소재 외국계 증권사가 해외 본사나 계열사와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도 외부망으로 간주되어 망분리 필요

2 개선사항

- 외국계 증권사가 정보처리시스템을 국외소재 본점, 지점 및 계열사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금감원이 승인한 경우 망분리 예외 적용

('15.9.21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3 기대효과

- 외국계 증권사의 장비 추가설치 및 관리로 인한 비용 및 업무부담 완화
- 외국계 증권사 20개사가 수혜